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73 발의연월일: 2024. 11. 7.

발 의 자: 김상욱 • 고동진 • 김기현

박성민 · 김상훈 · 천하람

안철수 • 주진우 • 주호영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75)를 감면함. 반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의 감면율을 적용함.

그런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라 는 이유로 입주기업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 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

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 및 제8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로, "100분의 60"을 "100분의 75"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4항"을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같은 항제2호나목"을 "제4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직접사용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 3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③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 • 보유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1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	
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	
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u>취득</u>	<u>취득</u>
<u>세의 100분의 35를</u> , 그 산업	세의 100분의 50을
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	
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	
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	<u>100</u>
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u>분의 75</u>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	

세를 추징한다. 가.·나. (생 략)

- 2. (생략)
- ④ ~ ⑦ (생 략)
- 8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 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 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제3항 또는 제4항
<u>제4</u>
<u>항제2호나목</u>
⑨ (현행과 같음)